

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23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년 3월 일

발의자 : 오승철 의원

1. 제안이유

- 가. 현행 조례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장애인 관련 신청의 심사 순위가 상대적으로 뒤에 배치되어 있고 장애인 신청이 서로 경합하는 상황에서 적용할 우선 허가 기준을 조문으로 구체화한 규정이 미비함.
- 나. 따라서 “장애인”, “장애인체육동호회” 및 “장애인단체”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적용 대상을 정비하는 한편, 사용허가 경합 시 장애인 관련 행사의 우선순위를 상향하고 장애인 간 경합 시 우선 허가 기준을 특례로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정의 규정에 “장애인”, “장애인체육동호회” 및 “장애인단체”을 신설(안 제3조제13호 및 제14호)
- 나.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의 우선순위를 조정(안 제6조제3항)
- 다. 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(안 제6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나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다. 관계법령 발췌서 : 해당없음

라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“장애인” 및 “장애인체육동호회”의 뜻은 「하남시 장애인체육진흥 조례」 제2조에 따른다.

14. “장애인단체”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.

제6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(종전의 제4호) 중 “동호인”을 “동호인(장애인체육동호회 포함)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(종전의 제5호) 중 “장애인단체, 장애인체육동호회”를 “장애인단체”로 한다.

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의3 및 제6조의4로 하고,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)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때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6조(사용허가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<u>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 경기대회</u></p> <p>5. 장애인, <u>장애인단체</u>, 장애인 <u>체육동호회</u>의 행사·경기(사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<u>“장애인” 및 “장애인체육동호회”의 뜻은 「하남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」 제2조에 따른다.</u></p> <p>14. <u>“장애인단체”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.</u></p> <p>제6조(사용허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-- <u>동호인(장애인체육동호회 포함)</u> ---</p> <p>4. ----- -- <u>장애인단체</u>---</p>

용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자가 우선한다)

6. (생략)

④ (생략)

<신설>

제6조의2·제6조의3 (생략)

6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 순위에 대한 특례)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때에는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제6조의3·제6조의4 (현행 제6조의2 및 제6조의3과 같음)